

● 제30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1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3068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경우 의원외 12명
- 나. 제안일 : 2022. 1. 21.
- 다. 회부일 : 2022. 1. 2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수의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이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 한도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른 반영사항임.
- 2012년부터 추진한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규모를 확대(15명→20명 이내)하고, 정원 100명미만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지원 및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사항 검토

####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정수를 기존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1년 12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sup>1)</sup>을 반영하는 것임.
-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보육계획 수립이나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결정 등 서울시 보육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수확대를 통해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sup>2)</sup>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20명 이내로 상한을 정하여 표결 시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홀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원 100명미만 어린이집 간호사 지원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 개정안(안 제19조의4제1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5항<sup>3)</su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sup>4)</sup> 및 별표<sup>5)</sup>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3)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영유아와 교직원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영유아와 교직원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배치도 허용하고 있는 바,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간호조무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정안(안 제19조의4제2항)은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하는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6)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제3조제1항7) 및 「영유아보육법」제4조제1항8)에서 시

---

6)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장이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지원은 시장의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sup>9)</sup>에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따른 전문자격인 면허<sup>10)</sup>를 가진 의료인인 간호사<sup>11)</sup>를 지원하는 동 사무는 민간위탁 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 방식을 통해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비인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는 수혜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sup>12)</sup>을 고려하여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

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10)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2021)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9조의 2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매년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단체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 소요예산 : ('21) 7억원(시비 100%)
- 지원대상 : ('21)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3,057)개소 중 1,500개소
- 지원내용 :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영유아 신체계측, 발달 및 건강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보건교육 등  
(보육교직원) 건강사정 및 상담, 안전보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보건교육  
(부모상담) 코로나19예방 등 가정통신문 발생, 요청 시 학부모상담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연도말까지) 2021.5월~12월

- 또한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까지 4개월 가량 소요되어 실제 사업 추진 시간은 8개월 남짓으로 사업기간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sup>12)</sup>
- 특히 어린이집이 새학기를 시작하여 방문 간호사 지원이 가장 필요한 3월에 사업이 단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pp. 58-66.

13)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회의(2017년 6월 16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배치 대상이 아닌 정원 100명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고, 동 사무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